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6. 6. 10.  
행정재무위원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4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4월 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보류  
제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재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 가. 제안이유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84. 5. 1부터 무이자 융자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90년부터는 국고지원이 중단되어 지원자금이 감소되고 있으며, 가구당 지원액이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자원이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혜가구는 융자금의 “보조금”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체납사례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융자금의 금액을 확대하여 수혜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되도록 하여 무이자 융자, 체납증가로 인한 지원자금 부족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부이자 신설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조례명칭 변경: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 대상사업: 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지원(안 제3조)
- 지원액: 주민소득지원금자금 - 2천만원 이하  
영세민생활안정기금 - 1천만원 이하 (안 제5조)
- 지원조건: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안 제8조)
- 이 율: 년리 5% (안 제5조)
- 운영관리 체계  
대상자선정 및 융자금 지급 : 대상자 선정 - 구  
융자금지급 및 회수 - 지정금고 위탁 (안 제6조)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 영훈)

동 조례안은 내무부 진흥13240-191('95.5.9)호와 서울시 진흥13240-47('95.5.11)호로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준칙이 시달된 것이기는 하나 동 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용자 지원대상을 지역 사회여건에 맞게 주민소득 지원자금이나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으로 한정된 것과 지원액을 실질적으로 상향조정된 점, 대부이율을 대부분의 정책지원자금의 이자율인 5%선으로 책정한 것이나 지원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 용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점과 자금관리·회수, 채권확보 등 자금의 운영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점 등은 적절하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대부기간을 3년거치 2년 균등상환하던 것을 2년거치 2년 균등상환하는 것은 생활안정이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며, 지원금 상환기일도 현행은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제정되는 조례에는 단순히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씩 2년간 균분상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환기일이 애매하게 되어있으며, 용자금 반환의 경우도 용자를 받은 자가 구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당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와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로 규정한 것은 매우 추상적인 규정이며, 기금관리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현행 자금의 관리 측면에서 압류·경매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행정력으로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체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담보물건 설정이 안되었을 경우 체납처분 절차의 존치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심의해 보아야 한다고 사료됨.

### 4. 審查結果 : 원안 의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53
----------	----

제출년월일 : 1996. 4.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정 이유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84. 5. 1부터 무이자 용자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90년부터는 국고지원이 중단되어 무이자 용자로 인해 지원자금이 감소되고 있으며, 가구당 지원액이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자원이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혜가구는 용자금을 “보조금”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체납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자금의 금액을 확대하여 수혜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되도록 하여 무이자 용자, 체납증가로 인한 지원자금 부족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부이자 신설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조례명칭 변경: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 대상사업: 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지원(안 제3조)
- 지원액 : 주민소득지원금자금 - 2천만원 이하 (안 제5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 1천만원 이하
- 지원조건: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안 제8조)
- 이 율: 년리 5% (안 제5조)
- 운영관리 체계  
대상자선정 및 용자금 지급 : 대상자 선정 : 구 (안 제6조)  
용자금지급 및 회수 : 지정금고 위탁

### 3.조례(안) : 별첨

### 4.예산조치 : 필요없음

덧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3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용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

### 제 2 장 용 자 지 원

제3조 (용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 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사·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퍼센트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퍼센트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용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용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용자한도 및 이율 등) 가구당 용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금의 대부율은 연 5%로 한다.

제6조 (용자금 대부신청) ① 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용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 (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로 하되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씩 2년간 균분상환한다.

제9조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장 특 별 회 계 의 설 치

제13조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용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중복용자의 금지)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용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용자할 수 없다.

제16조 (용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용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 (용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용자된 용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